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3

의안 번호	185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구청장(기획예산과)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양미영)

가. 제안이유

○ 『2023년 강남구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내용과의 불일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 기초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표현 및 용어의 순화

(1) “통할”을 “총괄”로 용어를 순화함

(2)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용어를 순화함

(3) “회무”을 “사무”로 용어를 순화함

(4) “감안”을 “고려”로 용어를 순화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2021.12.24. 시행)으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준용 조문 정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준용 조문 정비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인용조항 정정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자치법규의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28. ~2023.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본칙에 다른 여러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방식의 조례안임.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총 37건이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존 일본식 또는 비실용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 용어로 수정하여 용어순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2건이 해당 됨.

- 예컨대, “감안(勘案)하다”라는 표현을 “고려(考慮)한다”로 하고, “통할(統轄)한다”를 “총괄(總括)한다”로, “회무(會務)”를 “사무(事務)”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처럼 같은 한자어 계열의 용어일지라도 일반대중(언중)이 많이 쉽게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참고로 “통할하다”는 사전적으로 “(사람이 어떤 단체나 사람들을)모두 거느려 다스리다”라는 의미로 상당히 권위적이고 자주 사용되지 않은 용어이며, “회무”는 “회의의 업무”라는 뜻으로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임.

○ 둘째, 강남구 내부 규칙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등의 표기가 내재된 조례들의 각 조문 내용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4건이 개정 대상임.

- 이 규칙은 각종 예산의 실무적 집행(지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며,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입안되고 시행되는 내부 규정이기에 이 훈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도 개정되고 있어 기존의「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은 2020년 11월 6일「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규칙명이 변경되었다가 이후, 2021년 12월 24일에「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음.

○ 셋째,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전면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강남구 조례들 중「지방자치법」각 조문을 관련 근거로 인용한 조례 내 개정된 법 인용 조문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번	개정대상 조례명(관련 조문)	인용 조문 정비 사항(구) → (신)		소관부서
		(구) 지방자치법	(신) 지방자치법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6조제1항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제1항**	총무과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설치목적)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	**제153조**(사용료),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및 제161조**(공공시설)	총무과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역경제과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제142조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여성보육과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42조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생활체육과

○ 넷째, 강남구 각종 조례 중 지방자치법 이외에 상위 인용 및 관련 법률 및 법령 등의 제명과 조문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등 6건임. *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 다섯째, “복수정비” 관련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등 4건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근거 법규 등 개정 사항, 용어 순화, 나의의 “만” 삭제 등을 반영한 것임.

○ 여섯째, 조례 중 연령 표기 부분 중 “만” 나이를 사용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등 6건의 “만”을 삭제한 것임. *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 정부와 법제처는 오는 6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을 명문화하는「행정

기본법」을 시행하려 하며, 이미 연초부터 “만 나이” 개선은 정부과제로 알려져 왔음. 또한, 연령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제4조(성년)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하여 나이에서 “만”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6월28일부터 시행될 관련법 내용은 다음과 같음.

행정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행정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신 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향후, 일괄정안이 의결되면, 각 대상 조례 부칙에 일괄개정으로 인한 개정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될 예정임.

부 칙 <제0000호, 2023.0.0.>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법제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강남구 자치법규와 상위법령 간의 연계성 유지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다만,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법제 형식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각 조례가 담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 등은 개별부서가 향후 이행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끝.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5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기획예산과

1. 제안이유

『2023년 강남구 자치법규 정비 계획』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법제처 정비지원팀-37호, 2023.2.16.)에 따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내용과의 불일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현 및 용어의 순화

(1) “통할”을 “총괄”로 용어를 순화함

(2)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용어를 순화함

(3) “회무”을 “사무”로 용어를 순화함

(4) “감안”을 “고려”로 용어를 순화함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2021.12.24. 시행)으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준용 조문 정비

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준용 조문 정비

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인용조항 정정

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자치법규의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28. ~2023.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5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10조제5항제2호다목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만 13세까지”를 “13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만 13세까지”를 “13세까지”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

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를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를 “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 중 “이하“구””를 “이하 “구””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자민원”이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를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법에”를 “「전자정부법」에”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7조”를 “「전자정부법」 제17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제4조제1항4호”를 “「전자정부법」 제4조제1항4호”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환경보전계획"이란"을 ""환경계획"이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을 "환경계획을 수립"으로, "환경보전계획을 성실히"를 "환경계획을 성실히"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주택용 소방시

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만2세”를 “2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라목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만 80세”를 “80세”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 ①·② (생 략)	제7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7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 ---------- ---------- ---------- 고려하여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 ---------- ---------- ---------- ---------- -- 고려하여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 ~ ④ (생략)	제10조(사용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이용자가 감면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사용료	⑤ ---------- ---------- ----------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강료 50퍼센트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사. ----------65세 -------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자. 수강등록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자. ---------- 13세까지- ----------
차. ~ 타. (생 략)	차. ~ 타. (현행과 같음)
3. 수강료 30퍼센트: 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세 이하의 취학	3. ---------- ------ 7세 ----------

전 아동	-----
4. 수강료 10퍼센트	4. ----------
가. 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가. ---------- ---------- ---------- ---------- 13세까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1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1. ---------- 고려한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고려하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서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립어린이집(이하 “구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시설 실태를 감안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저소득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 ---------- ---------- ---------- ---------- 고려하여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사무----------.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생 략)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고려하여 ----------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

치) ① ~ ③ (생 략)	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④ ----------.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1. ---------- 고려하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 고려하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 1. ---------- 고려한 ----------.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생략)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기간을 강남구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고려하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제13조(준용) ----------

사항 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를 포함한다)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정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④ (생 략)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치매관리법」, 「지역보건법」을 따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등) ----------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설치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의식 함양에	제1조(설치목적) ---------- --------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 ---------- ---------- ---------- ----------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서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 략)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1.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2. ---------- 법 제2조제1호 ----------. 3.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범위) ----------이하 “구”---------- 법 제2조제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2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	제1조(목적) ----------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의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전자민원”이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전자정부법」에 ----.
제11조(의견수렴 창구 운영)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인터넷 투표·설문조사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창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제도의 정비,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수렴 창구 운영) ------- 「전자정부법」 제17조--.
제16조(홈페이지의 폐기) ① (생략)	제16조(홈페이지의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법 제4조제1항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	② ---------------------------------- 「전자정부법」 제4조제1항4호 --

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25조)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26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환경보전계획”이란 장기적인 환경의 관리, 보전, 이용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방안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4조(정의) ----------. 1. ~ 6. (현행과 같음) 7. “환경계획”이란 ----------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구가 수립한 환경보전계획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 8. (생 략)	제5조(구의 책무) ---------- 환경계획을 수립---------- 환경계획을 성실히 ----------. 1. ~ 8.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보전계획)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10조(환경계획) ①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 환경계획----------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2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법률 시행령」 제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28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선진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서울	제4조(기금의 조성) ----------

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 ---------- 고려하여 ---------- ---. 1. ~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29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⑥ (생 략)	제5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고려하여 ----------.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강좌 수강 등) ① 센터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발달장애인으로서 만 18세부터 35세로 하고 수강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	제7조(강좌 수강 등) ① ------- ---------- 18세--------- ----------

게 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	5.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30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강료 등의 징수·납입) ①·② (생 략)	제14조(수강료 등의 징수·납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강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③ ----------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용정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시설별·사업별 이용정원은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수탁자의 시설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5조(이용정원) ---------- ---------- 고려하여 ---------- --------.
제16조(이용자의 자격)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이용자의 자격)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육실 : 여성능력개발센터 이용자가 동반한 만2세 이상 취학 전 아동	2. ---------- 2세 ----------
3. 창업보육지원실 :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여성 전문기업인으로서의	3. ---------- ---------- ----------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여성 가. ~ 다. (생 략) 라. 4순위 : 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20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31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이용료 등의 징수·납입) ① (생 략) ②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6조(이용료 등의 징수·납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이용정원) 센터의 시설별·	제17조(이용정원) ----------

사업별 이용정원은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수탁기관의 센터장이 정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고려하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3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 5. (생 략)	제2조(정의) ----------. 1. ---------- 19세 ----------. 2. ~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33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문금 지급) ① (생 략) ② 생일축하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③·④ (생 략)	제14조(위문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80세 ----------. ③·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34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	제2조(정의) ----------. 1. ----------

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 60세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35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저소득노인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1. ---------- ---------- ---------- ---------- ---------- ---------- ----------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말한다. 2. (생 략)	---- 65세 ---------- --------. 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36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 4. (생 략)	제2조(정의) ---------- ----------. 1. ---------- ---------- 12세 ----- ---------- ---------- ----. 2. ~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안 제37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 진료비의 면제) ① 삭 제	제3조(수수료, 진료비의 면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 ---------- 65세 ----------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